

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
규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형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하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26377

2. 정정사유 :

-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
-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(7.99% → 6.91%)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3. 정정사항 :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4. 변경시행일 : 2023.06.13.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
경된 집합투자규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www.hi-asset.com) 및 해당 판
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[집합투자규약 변경 대비표]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	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
제23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<u>제3영업일</u>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	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제25조(판매가격)	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	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
제26조(환매업무)	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4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</u>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	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 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
제27조(환매가격)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3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(중략)	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(15시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4영업일)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(중략)
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.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

	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	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
제32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대차대조표</u> 2.~3.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<u>재무상태표</u> 2.~3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보수)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	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</u> 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
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(생략) 1.~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①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(생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추가) 3.~5. (생략) ③~④(생략)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	①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3.~5. (현행과 같음) ③~④(현행과 같음)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

	<p>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 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모사전송</u>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 운용보고서 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팩스</u>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부 칙	신설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구분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 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 영	1.~7. (생략) 8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</u> 분산투자 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 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 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 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.~7. (현행과 같음) 8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(성 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 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 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 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	연혁 추가	신설	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 (7.99%→6.91%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 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 력에 관한 사 항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8.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대 상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및 기 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 영	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 ■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② 채권 :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(중략)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③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	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 ■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② 채권 :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(중략)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 ③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

		<p>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(신설)</p> <p>■하이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① 채권 :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(중략)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u></p> <p>②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(신설)</p>	<p>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- <u>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에 대한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p> 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에 대한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 <p>- <u>증권의 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에 대한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■하이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① 채권 :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(중략)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)</u></p> <p>② 자산유동화증권 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u></p> <p>- <u>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에 대한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</p>
--	--	--	---

			<p><u>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<u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<u>- 증권의 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[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■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②동일종목투자 ·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(중략)</u></p> <p>투자한도 초과 : (중략)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아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■ 하이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②동일종목투자 ·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</p>	<p>[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 ■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②동일종목투자 ·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(중략)</u></p> <p>투자한도 초과 : (중략)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않으면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■ 하이 우량채권 증권모투자신탁(채권) ②동일종목투자 · 자산총액의 30%까지 :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중략)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(중략)</u></p>

		<p>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(중략)</p> <p>투자한도 초과 : (중략)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아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투자한도 초과 : (중략)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<u>않으면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투자 위험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: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신설)</p>	<p>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: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 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증권대차 거래위험 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	<p>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사항 반영</p>	<p>실제 수익률 변동성 : <u>7.99%</u></p>	<p>실제 수익률 변동성 : <u>6.91%</u>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매입 3)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나)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</p>	<p>가. 매입 3)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나)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</p>

		<p>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나. 환매 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)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일)</u>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)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5영업일(D+4일)</u>에 환매대금을 지급</p>	<p>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나. 환매 2)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)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(D+2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일)</u>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) 오후 3시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일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5영업일(D+4일)</u>에 환매대금을 지급</p>				
<p>12.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 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</p>				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</p>	<p>-</p> <p>주1) (생략) (추가)</p> <p>주2) (생략)</p>	<p>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</p> <p>주1) (현행과 같음) ※ 기타비용 : 감사보수, 펀드평가보수, 채권평가보수, 펀드결제수수료, 지수사용료, 해외거래예탁비용, 해외분담금, 보관대리인보수 등.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10 1771 1458 2013"> <tr> <td data-bbox="1010 1771 1233 1966">구분</td> <td data-bbox="1233 1771 1458 1966"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1010 1966 1233 2013">기타비용</td> <td data-bbox="1233 1966 1458 2013">139</td> </tr> </table> <p>주2) (현행과 같음)</p>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기타비용	139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
기타비용	139						

		(추가)	<p>※ <u>증권거래비용 : 국내주식매매수수료, 국내채권매매수수료, 장내파생매매수수료, 기타매매수수료, 콜증개수수료, SWAP매매수수료, 대차관련수수료, REPO수수료, 해외주식매매수수료, 해외채권매매수수료,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,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. 단,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8 577 1455 824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>증권거래비용</td> <td>9,415</td> </tr> </table> <p>※ <u>금융비용 :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8 913 1455 1160"> <tr> <td>구분</td> <td>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</td> </tr> <tr> <td>금융비용</td> <td>-</td> </tr> </table>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증권거래비용	9,415	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금융비용	-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				
증권거래비용	9,415										
구분	금액(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, 단위 : 천원)										
금융비용	-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내용 반영	<p>나. 과세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</p> <p>-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의 12%(해당 과세기간에 중 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%(주1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다만,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</u></p>	<p>나. 과세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</p> <p>-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</p> <p><u>-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</u></p>								

		<p>없는 것으로 하고 (중략)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(중략)</p> <p>②과세이연 (생략)</p> <p>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의 다양성</p> <p><u>연금수령, 일시금 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	<p>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②과세이연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,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.</p> <p>- 자세한 사항은 통합연금포털 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‘연금세제안내’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p>
--	--	--	--
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	(신설)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	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	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		-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 :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갱신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	---	--

3. 기타 집합 투자기구 관 련회사에 관 한 사항	관계사 사명 등 변경	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<u>신한아이타스</u> 주소·연락처 : <u>서울 영등포구 여의대 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20층</u>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<u>KIS채권평가(주)</u>	나. 일반사무관리회사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<u>신한펀드파트너스</u> 주소·연락처 : <u>서울 영등포구 국제금 용로 2길 28 18,19,20층</u> 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) 회사의 개요 회사명 : <u>KIS자산평가(주)</u>
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나. 임의해지 1)~2) (생략) 3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경과 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투자신탁 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 미만인 경우	나. 임의해지 1)~2) (현행과 같음) 3)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시 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투자신탁 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액이 50억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가. 정기보고서 2) 자산운용보고서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 전신· <u>모사전송</u> 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	가. 정기보고서 2) 자산운용보고서 ③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 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 전신· <u>팩스</u> 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 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 우
3. 집합투자기 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 정사항 반영	나. 수시공시 2) 수시공시 ① (생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	나. 수시공시 2) 수시공시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

		<p>및 그 사유 (추가)</p> <p>③~⑦ (생략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)로서 <u>설정 및 설립 이후 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<u>설정 및 설립되고 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및 그 사유 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)로서 <u>설정 이후 1년 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<u>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
<p>붙임. 용어의 정의</p>	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<u>사모 펀드에만 허용</u>이 되고 있습니다.</p>	<p>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.</p>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구분	정정 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내용 갱신	-	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작성기준일 변 경에 따른 내 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운용전문인력	작성기준일 변 경에 따른 내 용 갱신	-	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
투자자 유의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 이 경 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 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 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 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 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 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 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(법시 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 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</u>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 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 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 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 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·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 입한 경우 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·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 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 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 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 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</u> (D+3)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 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 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 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

		<p>지급</p> <p>·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5영업일(D+4)</u>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</p>	<p>·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5영업일(D+4)</u>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</p>
--	--	--	--